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752
----------	------------

제안일자 : 2025. 6. 18.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령 체계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관리주체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4조 제목 및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안 제10조제1항)
-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에게 교육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를“(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각각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7호----- ----- ----- -----.	3. (개정안과 같음)
4.“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u>주택관리업자등</u> ”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 ----- -----.	4.“ <u>관리주체등</u> ”----- -----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야 한다.

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 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노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등-----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 권고) ①-----

-----.

②-----

-----.

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0조(인권 교육 및 홍
보) 시장은 관리 노동
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주택관리업자등
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
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
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인권 교육 및 홍
보) ①-----

-----주택관리업자
등-----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
른 교육 및 홍보를 관
련 전문기관·단체 또
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등-----

-----.

제10조(인권 교육 및 홍
보) ①-----

-----관리주체등-----

-----.

②-----

-----법인 등을 통해 실
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를 “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를“(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각각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주택관리업자등”을 “관리주체등”으로, “실시하도록”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동주택”이란 「<u>공동주택 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입주자등”이란 「<u>공동주택 관리법</u>」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p> <p>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p>	<p>제2조(정의)</p> <p>1. ----- 「<u>공동주택 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p> <p>2. (현행과 같음)</p> <p>3. ----- 법 제2조제1항제7호----- -----.</p> <p>4. “<u>관리주체등</u>”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현행	개정안
<p>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리 노동자와 <u>주택관리업자등</u> 간의 상생협약 체결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0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u>주택관리업자등</u>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u>실시하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9조(상생협약 체결 지원)----- ----- ----- --- <u>관리주체등</u> ----- ----- -----.</p> <p>제10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 <u>관리주체등</u> ----- ----- ----- -----연 1 <u>회 이상 실시하도록</u> ----- -----.</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u>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u></p>